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046
----------	-------

발의연월일 : 2018. 10. 23.

발 의 자 : 박용진 · 강병원 · 강창일
강훈식 · 고용진 · 권미혁
권칠승 · 금태섭 · 기동민
김경협 · 김두관 · 김민기
김병관 · 김병기 · 김병욱
김부겸 · 김상희 · 김성수
김성환 · 김영주 · 김영진
김영춘 · 김영호 · 김정우
김정호 · 김종민 · 김진표
김철민 · 김태년 · 김한정
김해영 · 김현권 · 김현미
남인순 · 노웅래 · 도종환
맹성규 · 민병두 · 민홍철
박경미 · 박광온 · 박범계
박병석 · 박영선 · 박완주
박재호 · 박 정 · 박주민
박찬대 · 박홍근 · 백재현
백혜련 · 변재일 · 서삼석
서영교 · 서형수 · 설 훈
소병훈 · 손혜원 · 송갑석
송기헌 · 송영길 · 송옥주
신경민 · 신동근 · 신창현

심기준 · 심재권 · 안규백
안민석 · 안호영 · 어기구
오영훈 · 오제세 · 우상호
우원식 · 원혜영 · 위성곤
유동수 · 유승희 · 유은혜
윤관석 · 윤일규 · 윤준호
윤호중 · 윤후덕 · 이개호
이규희 · 이상민 · 이상헌
이석현 · 이수혁 · 이용득
이원욱 · 이인영 · 이재정
이종걸 · 이철희 · 이춘석
이학영 · 이해찬 · 이후삼
이 훈 · 인재근 · 임종성
전재수 · 전해철 · 전현희
전혜숙 · 정성호 · 정세균
정재호 · 정춘숙 · 제윤경
조승래 · 조용천 · 조정식
진선미 · 진 영 · 최운열
최인호 · 최재성 · 추미애
표창원 · 한정애 · 홍영표
홍의락 · 홍익표 · 황 희
의원(12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경우 유치원이 사유재산이라는 인식이 강하여 사인인 설립자나 원장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수 적발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은 설립자와 원장을 겸하는 경우가 많아 비위가 적발되었을 경우 사실상 본인이 본인을 징계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함. 이는 현행법상 징계위원회 구성 등 징계관련 내용이 사립학교 경영자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임.

이에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경우 유치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고, 법인과 개인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인인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해임이나 징계를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르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제3항 후단 및 제74조제3항 등).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9조의 제목 중 “區分”을 “區分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교육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4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3조의2 중 “第29條第6項(第51條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29조제6항·제7항(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7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보고를 한 경우

2. 제54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해임 또는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제54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해임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의결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할청이 교원(학교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임용권자에게 교원의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겸직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제23조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해당 유치원장의 직을 사직하여야 한다.

④ (생략)	<u>청의 해임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u> ④ (현행과 같음)
--------	---